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2. 3. 31 선고 2019가합200743, 2020가합20240(반소),
2020가합20912(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제3자이의 · 사해행위취소 · 제3자이의]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창

피고(반소원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강정현

독립당사자참가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식

변 론 종 결 2022. 3. 3.

판 결 선 고 2022. 3. 31.

주 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청구,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가합564470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9. 11. 18.경1)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반소] C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물건에 관하여 2016. 3.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C에게 이 사건 물건을 인도하라.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본소, 반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전제된 사실

가. 피고의 C에 대한 대출

피고는 2014. 4.경부터 C에 중소기업시설자금 등을 대출해 주었고, 2014. 11. 10. 그 담보로 E단지 안에 있는 C의 공장용지 2필지(속초시 F, G)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C이 2014. 12.경 위 공장용지에 공장건물 2동을 짓자, 피고는 2014. 12. 10. 위 공동근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 한다)에 의한 저당권으로 변경하면서 같은 법 제6조2)에 따라 위 공장용지, 위 공장건물 및 기계, 기구 등을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목록(이하 ‘이 사건 목록’이라 한다)에 기재하였고 이후에도 기계, 기구 등을 이 사건 목록에 추가하였다.

나. C의 이 사건 물건 설치 경위와 공사비용

C은 2014. 12.경 위 공장건물 내부의 수조에 킹크랩 등 수산물을 저장하거나 키우기로 하였다. C은 이에 필요한 해수를 끌어오기 위하여 속초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얻어, 그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인근 해수를 위 공장까지 끌어올 수 있는 직경 300mm 인입관과 관련 펌프시스템인 이 사건 물건을 도로 지하에 설치하였다.

C은 처음에는 위 공장건물에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해수펌프를 이용한 해양심층수를 공급받으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물건의 한쪽 끝부분을 H가 관리하는 속초시 I에 있는 펌프실에 연결하였다. 그런데 C이 H와 해양심층수 사용료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H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C은 위 공장건물 인근의 외옹치항에서 표층해수를 끌어오기로 하고 2015. 3.경 이 사건 물건의 한쪽 끝 부분을 외옹치항 부근으로 연장하는 추가설치를 하였다.³⁾ 이와 같이 C이 이 사건 물건을 설치하는 데 약 11억 원 정도의 공사비용이 들었다.

다. C의 D에 대한 이 사건 물건 매도

C은 2016. 3. 17. D에 대금 1,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물건을 매도하였다.

D는 2016. 3. 28. H와, 해양심층수 공급 및 사용에 합의하여, H가 전기료 등을 부담하고 이 사건 물건과 연결된 해수펌프를 작동시켜 해양심층수를 공급하면, D는 그 해양심층수를 사용하고 사용량에 따라 H에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의 공장용지 등에 대한 임의경매신청, 그 경매절차 진행 중 D와 K의 이 사건 물건 매매계약 체결 및 심문기일 진행 내용

피고가 C의 대출원리금 연체 등을 이유로 2016. 11.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C의 공장용지 및 건물 등에 관하여 위 공장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L), 그 무렵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그런데 D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7. 7. 14.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 D가 K에 대금 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물건을 매도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물건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당시 C 대표이사 M는 2017. 7. 17.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물건이 경매목적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물건은 이 사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타인에게 11억 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 대리인 N는 같은 심문기일에서 ‘C 공장용지 근처에 땅을 가지고 있어 향후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물건을 11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의 D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물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심문기일 이후 피고는 2017.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2017카합81315), 위 법원은 2017. 10. 17. 피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소속 집행관은 2017. 10. 25. D의 본점 소재지(속초시 O)에 ‘위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물건에 대한 D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보관한다’는 취지의 고시문을 게시하였다.

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의한 C 공장용지 등 취득 등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C의 공장용지와 공장건물 및 기계 등을 매수하고 2017. 11. 21.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도 마쳤다. 한편 이 사건 물건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되었다.

사. 피고의 소제기에 따른 이 사건 판결 및 항소심 판결 선고 등

피고는 2017.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과 D 등을 상대로 본안소송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2. 13. ‘피고에게, C은 3,498,952,0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M는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723,166,5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D와 C 사이에 이 사건 물건에 관하여 2016. 3.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D는 C에게 이 사건 물건을 인도하라’는 취지로 무변론판결인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D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2018나2002576). 서울고등법원은 2019. 4. 25. ‘D와 C 사이의 이 사건 물건에 관한 2016. 3. 17.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한다. 선의라는 수익자 D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은 확정되었다.

아. 원고의 D 공장용지 취득 및 원고와 K의 이 사건 물건 매매계약 체결

D는 2015. 11. 11.경부터 앞서 본 C의 공장용지 바로 옆에 공장용지 여러 필지(속초시 P 등)4)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Q)를 통하여 D 소유의 위 공장용지들을 매수하고 2019. 4. 12.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9. 4. 10. K과, 원고가 K으로부터 대금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물건을 매수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원고의 D 공장용지 매도

원고는 2019. 8. 29. H에, 위 아.항 기재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한 D의 공장용지들(속초시 P 등)을 매도하였고, H는 2019. 9. 24.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차.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과 이 사건 물건의 점유관계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2019. 7.경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9. 11. 18.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압류 집행을 실시하였다.

한편 이 사건 물건은 현재 원고가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 11, 13, 14호증, 병 제1 내지 3, 7, 9, 11 내지 13, 15, 16,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N, J의 각 증언, K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킹크랩 사업을 하고자 위 사업에 필요한 해수인입관이 갖춰진 부지를 알아보던 중, K 고문 V을

통하여 K이 해수인입관인 이 사건 물건을 소유한 사실과 이 사건 물건 인근의 D 공장용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물건을 3억 원에, 위 공장용지를 약 30억 원에 각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9. 4. 10. 이 사건 물건을 매수하면서, K이 2017. 7. 14.경 D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매수 이후에는 속초시에 취득세 등까지 납부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물건이 C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전제된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2017. 7. 14. K과, 원고가 K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대금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등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물건에 관한 C과 D 사이의 2016. 3. 17.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D와 K의 2017. 7. 14.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K과 원고 사이의 2019. 4. 10.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제2, 3계약은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되어 무효이거나, 적어도 원고는 이 사건 제2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체결되었음을 아는 약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유효하게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5 내지 19, 21, 24, 26호증의 각 기재, 을 제25호증의 영상, 증인 N의 증언,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W 및 주식회사 X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3계약은 모두 이 사건 물건을 실제로 매매하지 않을 의사, 즉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제2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우선 D와 K이 이 사건 제2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매매대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제2계약은 계약금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잔금일 2017. 7. 19.로 정하고 있다.

K은 이 사건 제2계약의 계약체결일인 2017. 7. 14. 23:23에 X은행 금융계좌에서 D에 5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D는 2017. 7. 14. 23:26에 곧바로 K의 W은행 금융계좌로 55,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또한 K은 위 잔금일까지 D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D와 K은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기 전후로 지속적인 금전거래관계를 가져왔다. 즉 D가 K에 2016. 12. 28. 3,100,000,000원, 2016. 12. 30. 210,000,000원, 2017. 1. 3. 560,000,000원, 2017. 1. 4. 90,000,000원 등을 송금하고, K이 D에 2017. 3. 9. 200,000,000원, 2017. 7. 11. 190,000,000원 등을 송금하였다.

㉣ 한편, K은 이 법원에 “이 사건 제2계약서에 매매대금을 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는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약체결일에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2017. 7. 14.에 계약금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수령하고, 2017. 8. 30. 잔금 2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수령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조회회신서를 제출하면서, 계약금액이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이 사건 물건에 관한 별개의 2017. 7. 14.자 매매계약서, 그 대금지급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등을 첨부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첨부된 별개의 2017. 7. 14.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잔금일이 2017. 8. 4.로 기재되어 있는 점, 앞서 본 것처럼 K과 D가 지속적인 금전거래를 가져왔고 K이 2017. 7. 14. D에게 지급한 55,000,000원은 불과 3분 만에 K에 반환된 점, K이 2017. 8. 30. 10:36에 X은행 계좌에서 D에 27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D는 같은 날 10:39에 곧바로 K의 X은행 계좌로 275,000,000원을 반환한 점, 잔금일을 변경하는 동일한 일자의 매매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음에도 이 사건 제2계약의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은 것이 경험칙상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K에 대한 위와 같은 사실조회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 결국 이 사건 제2계약에 관하여는, 그 계약서에 따른 계약금(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5,000,000원)과 잔금(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95,000,000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아래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D와 K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제2계약 당시 D의 본점 소재지와 K의 속초지점 소재지는 모두 ‘속초시 N’으로 동일하였다. 한편 K은 2018. 2. 20.경 속초지점 소재지를 ‘속초시 Y’으로 이전하였는데, D도 2018. 2. 27.경 본점 소재지를 같은 장소로 이전하였다.

㉣ K 홈페이지에는 D와 K이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것처럼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K/D는 대게/킹크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라이브 대게와 킹크랩을 수입하여 국내유통 및 해외수출을 하고 있으며, 청정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축양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충분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 제2계약 당시 D의 이사로는 대표이사 Z, 사내이사 AA, V, N, AB이 있었고, K의 이사로는 대표이사 AC이 있었는데, V와 AC은 형제 사이이다. D 이사 N는 2018년부터는 K 소속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였다.

한편 증인 N는 법정에서 ‘실제로는 2017. 3.경부터 K에서 근무하였고, D 사내이사 등기는 형식적으로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증인 N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D와 K의 임직원이 겹친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 N 이외에도, AD, AE, AF, AG, AH 등 직원들은 국민연금 등과 관련하여, D에 소속되었다가 K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 이 사건 제2계약 당시 K은 D 발행주식 10만 주 중 4만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최대주주였다.

㉧ D는 이 사건 제2계약 체결일(2017. 7. 14.) 이후인 2017. 12. 초순경 독립당사자참가인(상호: AI)과, D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이 사건 물건 중 지분 50%를 2억 원에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 협의하고 그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다만 위 협의는 2017. 12. 중순경 결렬되었다), 이 사건 제2계약 체결일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물건에 관한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④ 앞서 본 것처럼 N는 2017. 7. 17.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심문기일에 D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불과 3일 전에 체결된 이 사건 제2계약 사실을 진술하지 않고 D가 여전히 이 사건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제2계약서가 위 심문기일 이후에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나) 이 사건 제3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다음으로 K와 원고가 이 사건 제3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이 사건 제2계약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3계약의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9. 5. 8. 13:46:22 K에게 송금한 330,000,000원이 이 사건 제3계약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이 당사자인 거래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거래의 외관만 만들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하는 위 330,000,000원은, K의 1인 주주인 주식회사 AJ이 그 직전인 2019. 5. 8. 13:14:11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송금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주식회사 AJ으로부터 위 300,000,000원을 송금받기 이전 원고 금융계좌의 잔고는 약 3,8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게다가 K은 2019. 5. 10. 주식회사 W 계좌에서 주식회사 AJ에게 3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결국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이라고 주장하는 거래는 ‘주식회사 AJ → 원고 → K → 주식회사 AJ’ 순으로 이루어진 순환거래에 불과하였다.

㉡ 원고는 2019. 2. 25. D의 공장용지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Q 임의경매절차에서 입찰보증금 158,660,45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돈의 출처는 주식회사 AJ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금해 준 160,000,000원이었다. 원고가 2019. 4. 12.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지급한 매각대금 중 금융기관 대출금을 제외한 1,331,339,550원은 주식회사 AJ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금해 준 1,500,000,000원에서 비롯되었다(원고 금융계좌의 잔액은 2019. 4. 10. 0원이 되어, 2019. 4. 12. 주식회사 AJ으로부터 15억 원을 송금받기 전까지 계속 0원이었다). 또한 원고는 나머지 매각대금 1,260,000,000원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하였는데, 그 이자도

주식회사 AJ로부터 송금받아 납부하였다.

㉔ 원고는 H와의 2019. 8. 29.자 공장용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H로부터 2019. 8. 29.

300,000,000원, 2019. 9. 10. 1,200,000,000원을 송금받자마자, 곧바로 주식회사 AJ에 전부 송금하였다.

㉕ 원고는 '주식회사 AJ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물건 대금을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㉖ 아래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 K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거나 형식적으로 설립된 회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㉗ 주식회사 AJ은 K과 마찬가지로 그 상호에 'AK'을 포함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AC으로 동일하다. 또한 주식회사 AJ의 2019 회계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에는, K이 종속기업으로, 원고가 기타 특수관계기업으로 각 표시되어 있다.

㉘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주요 거래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즉시 주식회사 AJ에게 송금하거나, 주식회사 AJ로부터 송금받아 제3자에게 지급하였다.

㉙ 이 사건 제3계약 당시 원고의 주주로는 AL, AM, AN, AB이 있었다. 그런데 위 주주들 중 AL, AM, AB은 2019 회계연도에 관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AJ의 미등기임원이다.

㉚ 이 사건 제3계약 당시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이 사건 제2계약 당시의 D 본점 소재지, K의 속초지점 소재지와 동일한 '속초시 N'이었다.

㉛ 앞서 본 것처럼 N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심문기일에서 D의 대리인으로 참석하고, 실제로는 K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3계약 체결 무렵 D의 공장용지를 낙찰받았던 임의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Q)에서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입찰에 참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8. 12.말까지 K 속초지점에서 근무하였던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K 직원인 N가 원고의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㉜ 원고가 2018. 6. 15. 설립된 이후부터 이 사건 제3계약 체결일(2019. 4. 10.) 무렵까지 대표자로 등기된 자는 AO였는데, 원고 대리인 지위에서 임의경매절차 등에 참가하였던 N와 2018. 12.말까지 원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K 속초지점에서 근무하였다는 J은 모두 법정에서 'AO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㉔ 원고가 설립된 이후, 원고 소속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직원이 전혀 없다.

㉓ 한편 원고는 킹크랩 사업 등을 시작하기 위하여, D 공장용지를 낙찰받고 이 사건 물건을 실제로 소유할 의사로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물건에 관한 취득세 등도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5. 8. 속초시에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으로 6,6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K과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을 실제로 매매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 사건 제3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는 D 공장용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9. 4. 12.과 이 사건 제3계약 체결일인 2019. 4. 10.로부터 채 5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2019. 8. 29. 위 공장용지를 H에 매도하였고, 매도 당시 D의 위 공장용지는 별다른 건물이나 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였는데(현재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건을 매수하게 된 동기에 관한 원고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안전항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별도로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04013 판결 참조).

피고가 2017. 9.경 이미 수익자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그 무렵 D를 상대로 C와 D 사이의 이 사건 물건에 관한 2016. 3. 17.자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늦어도 2017. 9.경에는 C이 피고를 해함을 알면서 D에게 이 사건 물건을 매도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4. 3. 전득자인 원고를 상대로 C와 D 사이의 이 사건 물건에 관한 2016. 3. 17.자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에 관한 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인 주장의 요지

공장저당법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기계, 기구 등 공장의 가동, 운영에 제공되는 물건들은 모두 일체가 되어야 시설로서의 가치가 발휘된다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공장부동산의 부합물, 종물 및 그 밖의 공용물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 사건 물건은 C 공장을 위한 전용관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구조, 형태 및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수조, 해수인입관로, 해수펌프시스템, 수조컨트롤시스템 등이 모두 일체가 되어야만 비로소 수조로서 기능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물건은 C 공장의 토지, 건물, 기계 등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C 공장의 토지와 건물 등에 설정된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이 사건 물건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경매목적물에 이 사건 물건이 빠져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물건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C 공장용지와 건물 등을 매수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이다.

그러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이라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건이 C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물건에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공장저당법 및 민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6조에서 정한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319 판결, 대법원 1993. 4. 6.자 93마116 결정 등 참조).

그런데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물건이 이 사건 목록에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물건은 해수인입관로 및 해수인입을 위한 펌프인 사실, C이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약 11억 원을 들여 이 사건 물건을 설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목록에는 기계기구 및 공작물로 ① AP이 2014. 12. 제작한 감정평가액 50,000,000원의 수변전설비 1식, ② AP이 2014. 12. 제작한 감정평가액 240,000,000원의 냉동설비 1식, ③ AP이 2014. 12. 제작한 감정평가액 240,000,000원의 냉각순환 여과시스템 1식, ④ AQ이 2015. 5. 제작한 감정평가액 95,000,000원의 해수인입펌프설치공사 1식, ⑤ AQ이 2015. 5. 제작한 감정평가액 240,000,000원의 해수냉각기공사 외 1식, ⑥ AR가 2015. 7. 제작한 감정평가액 130,000,000원의 분리형 해수냉각기(2set) 1식, ⑦ AS이 2015. 7. 제작한 감정평가액 35,000,000원의 해수냉각기(소형) 1식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목록에 기재된 기계기구 등의 제작시점, 기계기구 등의 명칭 및 감정평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건은 이 사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물건에 미침을 전제로 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물건이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부합물이거나 공장의 공용물

인지 여부

공장저당법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그 부합물, 그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건을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부합물이라거나 공장의 공용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5)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물건은 속초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얻어 설치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C 공장의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

② 이 사건 물건은 인근 해수를 E단지 부근으로 공급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③ 이 사건 물건의 끝부분을 연장하면, C 공장 이외의 다른 공장에서도 이 사건 물건을 사용하여 해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C이 H와의 해양심층수 사용 협의가 결렬되자 외옹치항 부근의 표층해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물건의 끝부분을 연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C 공장 옆에 있는 D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물건을 매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④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심문기일에서, 당시 C 대표이사 M는 ‘이미 속초시에서 C 공장 및 E단지의 타 공장부지에 해수 유입을 위해서 다른 인입관을 설치해 두었으므로, C 공장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 사건 물건을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⑤ 이 사건 물건은 설치에 약 11억 원의 공사비용이 들었고, C과 D가 이 사건 제1계약에서 그 매매대금을 1,000,000,000원으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6) 이 사건 물건은 상당히 고가로 보인다. 만약 이 사건 물건이 C 공장의 토지, 건물, 기계 등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로서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포함되었다면, 적어도 이 사건 물건의 가치가 이 사건 목록의 감정평가액에는 반영되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이 사건 목록에 기재된 기계기구 및 공작물 중 최고가는 240,000,000원에 불과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안 석, 판사 배다현, 판사 최승호

[별지]

목 록

1. 해양심층수 인입관로

- 가. 에서 사거리(강원도 속초시)까지 별지도면 1. 표시 1, 2, 3, 4, 5의 각 점을 연결한 도로의 지하에 매설한 직경 300mm, 길이 약 1.5km의 관
- 나. 사거리(강원도 속초)에서 공장(강원도 속초시)까지 별지도면 2.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연결한 도로의 지하에 매설한 직경 300mm, 길이 약 630m의 관
- 다. 에서 삼거리(강원도 속초시)까지 별지도면 3. 표시 1, 2, 3, 4의 각점을 연결한 도로의 지하에 매설한 직경 300mm, 길이 약 220m의 관

2. 해수배수펌프시스템

- 가. 에서 사거리까지 별지도면 1. 표시 1, 2, 3, 4, 5의 각점을 연결한 도로의 지하에 매설한 펌프시스템
- 나. 사거리에서 공장(강원도 속초시)까지 별지도면 2.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연결한 도로의 지하에 매설한 펌프시스템. 끝.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제1항에서 “2019. 11.경”이라고만 기재하였는데, 병 제3호증의 기재 등에 따라 강제집행일을 특정하였다.

2) 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①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다만, 이렇게 끌어 온 표층해수는 해양심층수와 달리 수온이 높아 냉각기를 사용하여 수온을 낮춘 후 사용하여야 하였다(증인 J의 증언 참조).

4) 다만 그 이후인 2019. 10. 2. R, S, T, U가 위 P에 합병되었다.

5)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등 참조).

6) 이 사건 제2, 3계약을 각 통정허위표시로 판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매매대금은 고려하